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OECD Update

####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 개요

COVID-19 발발에 따른 영업단축, 사무실 폐쇄, 여행 제한 및 원격 근무 등 근무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일시적 변화가 개인 및 그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세무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OECD 사무국이 관련 지침 발간함.(OECD 사무국은 20년 4월 1차 지침을 발간하였으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발간)

##### 지침 적용

본 지침은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사무국 견해를 발행한 것으로, 대부분의 지침은 각 과세당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그러한 경우 각 세무당국의 판단을 대체하지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 본부

15 March 2021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않으며 각 관할권은 본 지침과 다른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지침은 COVID-19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1. 고정사업장에 관한 고려사항

### *Home Office (홈 오피스)*

COVID-19 특성 상, 정부가 권장하는 공중 보건 조치로 인한 임직원이 홈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것은 기업의 고정사업장("PE")이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형태는 영구성과 연속성을 결여하고, 기업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공중 보건 조치를 중단한 후에도 계속해서 임직원이 홈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정도 영구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홈 오피스가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근무 방식이 영구적으로 변경된 후 홈 오피스가 현재 기업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 제 5조 제 18 항과 제 19 항에 따르면 기업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고정사업장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18 항은 홈 오피스가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기업이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예: 고용의 성격 상 사무실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직원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홈 오피스는 기업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 중 하나 이상이 권장하는 공중 보건 조치로 임직원이 홈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 *Agency (에이전시)*

비거주자인 기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COVID-19으로 인한) 홈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종속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인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 제 5(5)조에 따르면 직원이 기업을 대신하여 "일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속 에이전트의 활동은 기업에 대한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제 5(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직원이 이러한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전트가 특수한 상황이나 정부의 공중 보건 조치로 인해 홈 오피스에서 일하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 제 5 조 제 98항은 기업이 제 5(5) 조에 따라 해당 관할권에서 고정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단순히 일시적인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가 COVID-19 이후 비거주자인 기업을 위해 홈 오피스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일상적인" 에이전트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OECD 가이드라인 제 5조 제 98항에 따라, 에이전트 역할을 "일상적으로" 간주하는 데 필요한 수행활동의 범위와 빈도는 계약의 성격과 기업의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에이전트 활동이 해당 관할권의 예외적으로 COVID-19로 인해 홈 오피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일상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COVID-19에 대한 공중 보건 조치 적용이 중단된 후에도 해당 활동을 계속하지 않는 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 **Construction Site (건설 현장)**

COVID-19로 인해 건설 현장의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 중단 기간은 현장 존속 기간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므로 건설 현장의 고정사업장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OECD 가이드라인 제 5(3)조 제 55항은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 현장의 존속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현장의 존속기간을 산정할 때 일시적 중단 기간을 포함).

다만, 관할 과세당국은 COVID-19의 비정상적인 상황과 정부에서 COVID-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권장하는 공중 보건 조치로 인해 공사 진행이 금지된 기간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기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 거주지 변경에 관한 고려사항**

이사회 구성원 또는 기타 고위 경영진의 relocation (근무지 재배치)이나 국경 간 이동 불가능으로 인한 기업의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효과적인 경영관리 장소)의 잠재적 변경으로 인해, 국내 세법에 따라 기업의 거주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세조약 목적 상

관할권에서 거주자로 간주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또는 기타 고위 경영진의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COVID-19으로 인한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거주지의 변경으로 인해 조세조약상 기업의 거주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국내세법에 따라 동시에 두 관할권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dual residence(이중 거주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이중 거주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드물다고 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 제 4조 제 24.1항에서는 과세당국이 거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기업의 이사회 회의가 일반적으로 개최되는 곳, 2) 최고 경영자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곳, 3) 고위 경영진이 통상적인 경영 관리를 수행하는 곳, 4) 고위 경영진이 소속한 기업의 거주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효과적인 경영 관리를 수행하는 "통상적인"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COVID-19 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관계와 상황을 조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조약 상 기업의 거주지는 기업의 경영 관리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적용된 공중 보건 조치에 의해 국경 간의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권 관련 우려

*Income of cross border workers that cannot perform their work due to COVID-19 restrictions (e.g. wage subsidies to employers) (COVID-19 제한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자의 소득 (예: 고용주에 대한 임금 보조금))*

고용주에 대한 임금 보조금 등 정부보조금은 근로 종료 장려금 또는 근로 없이도 일상적으로 받는 휴가 수당, 유급 병가 또는 유급 급여 등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5조 2.6 단락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던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관할권에 거주하고 이전에 다른 관할권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가 COVID-19 관련 정부 보조금을 근로를 수행하던

관할권에서 받는 경우, 그 소득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해당 근로 관할권에 귀속된다 할 수 있습니다.

***Stranded worker: exceeding days of presence threshold due to travel restrictions (여행 제약으로 인해 체류 최소일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5조에서는 질병기간을 포함한 전체 체류기간을 계산에 포함하나 질병 등으로 출국할 수 없고 그 일이 아니었다라면 원천지국에서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한 관할권에 거주하고 다른 관할권에서 고용을 제공한 개인이 다른 관할권에 고립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기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COVID-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2) 여행 제한이 없었다면 출국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세 대상이었을 경우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COVID-19로 인해 여행이 금지되고 183일 등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권에 남아있는 경우, 해당 관할권에서 여행 제한으로 추가적으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일부 관할권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접근방식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을 수 있으므로 각 관할권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Special provisions in some bilateral treaties that deal with the situation of cross-border workers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자에 관한 조세조약상 특별조항)***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는 장소의 변경은 일부 국가간 조세조약의 특별조항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특별 대우를 적용하며 근로자의 지위 변경을 유발하기 전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근로를 수행하는 관할권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일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인접 관할권들의 경우 인근 관할권으로 자주 통근하는 근로자가 다른 관할권에서 수행하는 근로활동이 명시된 최대 기간(일반적으로 4~6주 근무)으로 제한되는 경우 거주지 관할권에서만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세조약 중 일부는 COVID-19를 불가항력 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취급하는데 동의했으며, 따라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권에서 원격 근무하는데 소요한 시간은 근무 관할권 제한을 벗어난 최대 근무일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Teleworking from abroad i.e. working remotely from one jurisdiction for an employer of the other jurisdiction (고용주 관할권과 다른 관할권에서 원격 근무하는 경우)*

근로 수행장소의 변경에 따라 현행 조세조약에 따른 관할권 간 과세권 배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근로가 수행되었던 국가에서는 과세권을 잃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고용주 및 근로자의 협력비용 부담 등이 증가합니다.

한 예로 COVID-19 발생 전 근로자가 A 관할권 거주자로서 일반적으로 B 관할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COVID-19 발발로 인하여 A 관할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르면:

- 고용주가 B 관할권 거주자인 경우 B 관할권은 근로자가 B 관할권에서 물리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과세권이 축소됨
- 고용주가 B 관할권 거주자가 아니며 B 관할권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B 관할권에서 183일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 제공 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을 모두 상실함

결과적으로, 근로제공 장소의 변화는 과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주 및 근로자에 협력 비용이 발생 가능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과 행정적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 2. 국제조세/관세 Update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2020.12.24

###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AA)는 2013. 2. 22. 설립되어 금융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② 원고는 2014. 10. 1.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ZZZZ'(이하 'CC'이라 한다)와 컨설팅 계약(해외 우량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CC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용역대금을 CC에게 지급하였음

③ 서울지방법국세청장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CC이 국내에서 이 사건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

2)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관련법령	판단
<p><u>부가가치세법 제 5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음.</u></p>	<p>해외에서 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 및 수취되는 구조를 가지는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을 CC 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에 해당함. 그런데 CC 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서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의 설계작업을 본점 소재지인 DD 등 해외에서 모두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이 사건 거래지시서를 DD 사무실에서 원고 대표자에게 전달함. <u>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임</u></p>

<p><u>부가가치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는</u>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u>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함.</u></p>	<p>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u>이 사건 채권 거래를 설계해주었기 때문임.</u> 결국 위와 같은 거래의 설계가 이 사건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함. 이후 원고가 국내 투자회사를 통해 이 사건 채권 거래를 지시한 것은 그 당시 국내 투자회사를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부분은 이 사건 용역 내지는 이 사건 채권 거래 전반에 있어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p>
---	--

**외국인 소득세 12억 납부한 코인원, 법적 대응 방침 (2021.03.11)**

<https://paxnetnews.com/articles/71714>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따라 12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이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외국인(국내 비거주자)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과세 부담을 졌지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불복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18년 1월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청 조사 4국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코인원이 거래소를 오픈한 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이용자의 거래내역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3년 5개월 동안 외국인 고객이 원화로 출금한 누적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중개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상 의무가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코인원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다. 코인원은 거래 당시 외국인은



물론이고 국내 이용자들에게도 세금 납부 의무를 위임받지 않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인원을 일단 외국인 대상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만큼 불복 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를 완료했다"며 "향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 **카타르: 이전가격 문서화 가이드라인**

카타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문서화 적용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문서화 및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 또는 자산규모가 QAR 1천만(약 KRW 30억) 이상일 경우 이전가격 신고서(Transfer pricing declarations)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 또는 자산규모가 QAR 5천만(약 KRW 150억) 이상 및 해외 특수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과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타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신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Dhareeba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및 제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에 대한 COVID-19의 영향**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은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붕괴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s, 이하 "APA") 협정을 맺은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 협정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OVID-19 와 관련된 전 세계 각국의 정부 방침은 이전가격 국제 규범의 핵심인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는 COVID-19 이전가격 지침서(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PRC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은 이와 관련하여 자체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APA 협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COVID-19 의 제조업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영향**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간한 2019 중국 AP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 년 간 서명된 APA 의 대부분은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총원가가산율을 이용하는 경우(전체 208 개 APA 중 96 개, 즉 46.15%에 해당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NMM 방법은 비교대상회사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COVID-19 가 초래한 급격한 경제 변동은 분석대상 거래의 경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비교가능회사들은 더 이상 비교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 APA 상 명시된 TNMM 정상가격 범위는 더 이상 COVID-19 기간의 정상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중국 APA 는 경제분석 수행 시 여러 해의 가중평균 값을 해마다 적용하므로 COVID-19 의 영향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COVID-19 의 광범위한 영향에 비추어 볼 때, 가중평균 값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일반적으로 APA 의 중요 가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불가항력 및 경기 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와 같은 사유로 APA 변경신청(또는 철회)을 하고자 한다면, APA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 발생후 30 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변경의 경우 가능한 빨리 당국과 중요한 변화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APA 에 따라 사전 합의된 정상가격 범위에 대한 조정 가능 여부 또는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기간 동안 분석 대상 기간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들에 대한 고려**

현재까지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전가격 규정 미준수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경제분석

목적상 비교가능회사 선정 시 손실을 발생한 기업들을 제외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불러온 전례 없는 사업 불황으로 인해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들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의 상당 수가 일정 기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COVID-19 지침서 40 번째 문단은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제조업체들이 손실을 기록하더라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COVID-19 관련 지침을 발표하거나 OECD 지침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기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이나, 납세자는 APA 적용 또는 변경 논의 시 OECD 지침서에 따라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중국 내 COVID-19 관련 지역적 효익**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APA 협상 중 지역적 효익(Location-Specific Advantages)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중국 내 분석대상 회사들의 정상가격 범위 초과 이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UN의 개발 도상국 이전가격 실무 매뉴얼(The United Nations Practical Manual on Transfer Pricing for Developing Countries)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이 제기한 주요 이전가격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의 지역 선정에 따른 효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비교가능회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지역 선정에 따른 효익이란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자산, 자원 부족, 정부의 산업 정책 및 인센티브 등에서 발생하는 생산 상의 이점"입니다.

전국적인 폐쇄 조치 해제 후 사업 재개에 성공한 중국은 2020 년 GDP 성장을 이룬 유일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지역 비용절감(Location Savings)" 및 "시장 프리미엄"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중국의 유리한 경제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국가 간 통신 솔루션 수용**

디지털화 된 경제에 따른 신규 과세권 주장 또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즉, OECD Pillars One and Two proposals)의 도입 가능성 등 국제 조세 및 이전가격 분석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분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다른 관할 당국 또는 납세자와의 원활한 APA 관련 의사 소통을 위하여 가상 회의 등의 기술 솔루션을 점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이와 같은 통신 솔루션 채택을 통해 분쟁에 대한 논의 및 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4. 관세 Update

### 한·중미 FTA 전체 발효로 자동차부품·화장품 수출 유망 (연합뉴스, 2021-03-03)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 일 전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화장품, 음료, 의약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16 번째로 체결한 FTA로, 중미 5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 년부터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순으로 발효됐고 최근 파나마가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한·중미 FTA 전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장벽이 완화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바이어들은 자동차부품을 가장 유망품목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산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품목별로 1~5%에 이르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반응이라고 코트라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미 시장은 그동안 지리적 거리와 시차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면서 "FTA 전체 발효로 전자상거래, 비대면 마케팅을 활용해 중미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EU, 보잉·에어버스 보복관세 유보 (파이낸셜뉴스, 2021-03-06)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보잉과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보복관세를 6 달 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17 년에 걸친 항공기 제작업체 보조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 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EU 가 앞으로 4 개월간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갈등을 일단 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 가 서로 수십억달러 보복관세로 야기된 17 년에 걸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날 합의로 미국은 유럽산 항공기·치즈·와인 등 75 억달러어치에 물렸던 보복관세를, EU는 40 억달러어치 미국산 항공기·트랙터·보드카·럼주·담배 등에 물렸던 보복관세를 앞으로 4 개월 동안 중단하게 됩니다.

미국과 EU 양측이 대규모 보복관세를 일단 중단키로 함에 따라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이날 성명에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세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공평한 (경쟁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과 오랜 분쟁 속에서 서로 손해를 보는 관세 보복을 피하기 위한 협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동맹과 협력을 강화키로 하면서 미국과 EU 관계를 비롯해 동맹간 관계에도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